

「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 영 일

#### 나. 제안이유

- 「도봉국민체육센터」 다목적체육관을 체력단련실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내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도봉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정비(안 별표 2)
  - 1) 대인 사용료에 관한 사항
    - 다목적체육관(배구장) 삭제 및 체력단련실 신설
  - 2) 전용·부대시설 사용료 삭제
-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
(안 제3조~제5조, 제7조~제11조, 제13조, 제15조, 제17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
 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- 본 조례안은
  - 도봉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을 체력단련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사용료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생활체육 수요 확대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체력단련실 신설에 따른 사용료 규정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도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의 기존 대관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, 체력단련실 또한 초기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, 사용료가 민간 수준과 유사하게 책정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만큼 이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.
- 개관 초기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시설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,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객 만족도 및 수입·지출 구조를 분석하여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